회장 선거관리규정

제정 2023년 12월 10일

제1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삼보연맹 정관 제14조에 따라 대한삼보연맹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회장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 3 조(회장 후보자추천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① 대한삼보연맹(이하 “연맹”라 한다)은 대한삼보연맹 회장선거(이하 “회장선거”라 한다)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대한삼보연맹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선거일 전 20일까지 회장 후보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라 한다) 및 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회장선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편의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회장 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이 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겸임한다.

③ 추천위는 회장후보자추천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선관위는 회장선거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처리한다.

④ 각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선관위)

1. 대의원명부의 작성
2. 선거일 등 공고
3. 회장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접수
4. 대의원 총회 시 후보자 소견발표 진행, 투・개표관리 및 진행
7.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추천위)

1. 회장후보자 추천을 위한 심의 및 추천후보자 선정

⑤ 각 위원회는 설치된 날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존속하되,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제4조(회장 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 ① 추천위는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과 간사1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이사회의 추천으로 위촉하되 추천된 인원이 구성정수 이상일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다수결로 선정한다.

1. 명예회장(1인), 고문단 대표(1인), 이사회 대표(2인), 지부단체 대표(2인), 중앙대의원 대표(1인)

③ 분야별 위원회 구성정수 중 대상자 부재 등으로 부득이 위원 선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추천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선거관리규정 제4조 2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회장선거관리규정 제4조 제2항 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회장 후보로 등록한 자의 친족(민법 제777조의 친족을 말함)

⑤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기 전 연맹에 위원 위촉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⑦ 회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촉한다.

1. 사임의사를 표명한 경우
2.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친족(민법 제777조의 친족을 말한다)이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4. 회장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

⑧ 위원회의 위원 재적수가 5명 미만이 될 경우에는 위원을 보선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회장이 연맹의 직원 중에서 정한다.

제2장 회장 후보자 추천

제5조(회장 후보자 추천) ① 추천위는 회장 입후보자등록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2인 이상의 회장 후보자를 대의원총회에 서면으로 추천(별지 제2호 서식)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단, 추천위 위원 전원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는 1명의 회장 후

보자만 추천하여 등록할 수 있다.

② 회장 후보자추천을 위한 심의는 각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와 삼보발전 의지 및 역량, 미래발전전략, 재정확보 능력 등 향후 연맹운영의 제반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종합평가하여 회장 후보자 추천자를 결정한다.

제3장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제6조(선관위 운영) ① 선관위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선관위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선관위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해서는 아니 된다.
2. 위원회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는 그 존속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작성·보유한 모든 서류를 연맹에 인계하여야 한다.

⑤ 연맹은 제4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인수받은 서류를 해당 회장선거 당선인의 임기 말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⑥ 연맹은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선거운동기간) 선거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 전일까지를 말한다.

제8조(선거일)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만료되는 해 1월 정기총회일에 선거를 실시 한다.

②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는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

을 말한다.

1.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한 경우에는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
2. 연맹 회장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③ 선거일은 연맹과 선관위가 협의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선거일을 변경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④ 연맹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거일을 정한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연맹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장 대의원 명부의 작성 등

제9조(대의원) ① 정관 제19조에 따른 대의원은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연맹회장(대의원총회 의장), 중앙대의원, 시・도지부 대표

② 연맹에 등록된 시・도지부 중 관리단체로 지정된 회원단체의 대의원은 회장 선거의 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③ 대의원인 단체의 장이 회장에 출마하여 직무가 정지된 경우에는 지정한 직무대행자가 대의원이 된다.

④ 회장선거에 후보로 등록신청한 임원 및 직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⑤ 선거권을 가진 직책을 겸임할 경우는 투표권을 1표만 행사 한다.

제10조(대의원 명부의 작성) ① 위원회는 회장 선출을 위해 연맹으로부터 받은 대의원 명부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 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명부에 등재된 대의원은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수 없다.

③ 대의원 총회 개최 일정 및 안건 등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맹에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후보자 자격 및 등록

제13조(후보자의 자격 등)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장선거 후보자가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연맹 또는 시·도연맹 등 체육단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8.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의2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9. 국회의원
10. 연맹 및 시·도회장이 회장후보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 신청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되며, 지정된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지정된 부회장이 없을 경우에는 부회장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고 선거가 종료된 후 종전의 직무로 복귀한다.

제14조(회장선거 공고) 연맹은 회장 선거 일정 등에 관한 내용을 연맹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후보자 등록) 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 등록신청 기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관위에 서면으로 회장 입후보자등록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등록신청을 하는 사람은 등록 신청시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장 입후보자 등록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2. 회장 입후보자의 이력서-삼보 및 기타 사회공헌실적 포함(별지 제5호 서식)
3. 회장 입후보자의 자기소개서 A4 2매이내 (별지 제6호 서식)
4. 회장 입후보자 공약 및 출마의 변(별지 제7호 서식)
5. 회장 입후보자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별지 제9호 서식)
6. 기타 선거관리상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제6장 선거운동

제16조(선거운동의 정의)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기 위한 행위, 당선되게 하기 위한 행위, 당선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통상적인 업무행위

제17조(선거운동의 주체 및 방법) 후보자가 전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방법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8조(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정한다. 다만, 후보자가 선거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장 금지행위 및 제재조치

제19조(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회장으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대의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 및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따른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②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대의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다만, 공개된 체육시설 및 단체 사무실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20조(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금지) ①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연설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거나 또는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연설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시정명령 등) ① 위원회는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위반행위자 및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후보자에게 중지, 경고 또는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중지,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장 투·개표 및 당선인 결정 등

제22조(투표방법 등) ① 선거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대의원이 직접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투표는 대의원 1명마다 1표로 한다.

④ 대의원이 해외 출장 또는 국외 거주하여 부득이 국내 선거장소에 선거에 참가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선관위가 해당 대의원에게 투표용지를 이메일로 발송하여 투표토록하고 투표용지를 이메일로 보내오면 확인 후 이를 별도 밀봉하여 당일 투표함에 투입하여 개표토록 할 수 있다.

제23조(투표용지)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표시하되, 기호는 후보자의 게재순위에 따라 “1, 2, 3” 등으로 표시하고, 성명은 한글로 적어야 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적는다.

②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성명을 적고, 대의원이 해당 후보자의 회장선출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투표시간) 대의원 총회 및 회장선거 시간은 연맹과 선관위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25조(당선인 결정) ① 대의원 총회는 출석 대의원 과반수 득표자를 회장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2인 이상이 입후보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상위 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회장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회장 후보자가 1인일 때에도 투표를 실시하여 그 득표수가 과반수에 달하여야 회장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④제3항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였을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26조(회장 당선인 공고) 선관위는 회장 당선인이 결정되면 지체 없이 별지 서식에 의거 회장 당선인을 연맹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장 보 칙

제27조(투표 및 개표) ① 이 규정에 따른 회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 투표 및 개표는 수작업으로 실시한다.

② 선관위는 선거일 당일 투표관리 및 개표지원이 인력이 필요할 경우에는 투개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연맹에 인력 등의 지원요청을 할 수 있다.

제28조(재선거) 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후보자가 없는 경우
2. 당선인이 없는 경우
3. 법원 또는 선관위가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결정을 한 경우

② 재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선관위가 연맹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29조(보궐선거) ①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다만, 궐위된 날로부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궐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선관위가 별도로 정한다.

제30조(선거사무 지원) ① 선관위는 선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시 연맹에 선거사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연맹은 이에 대한 행정·재정 등의 지원을 해야 한다.

제31조(선거운영의 예외 등)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맹과 선관위가 협의를 거쳐 선거운동 방법의 일부를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부 칙(2023. 1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대한삼보연맹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 기타 선거와 관련한 필요사항은 추천위와 선관위에서 결정하여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위원 위촉 승낙서

1. 성　　명 :　　(한자:　　/ 영문:　　)

2. 생 년 월 일 :

3. 전 화 번 호 :

4. 이　메　일 :

5. 주　　소 :

위 본인은 제6대 대한삼보연맹 회장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 겸 회장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위촉을 승낙하며 회장선거관리규정의 제반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3년　12월　　일

위촉 승낙인　　㊞

(사)대한삼보연맹 귀중

<별지 제2호 서식>

회장 후보자 추천서

제6대 대한삼보연맹 회장 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추천합니다.

기호	성명	생년월일	직업 및 지위	비고
1				
2				
3				

2023년 12월 일

추천자 : 대한삼보연맹 회장후보자추천위원회 (인)

(사)대한삼보연맹·대한삼보연맹 대의원회 귀중

<별지 제3호 서식>

공 고

제6대 대한삼보연맹 회장 선거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회장 선거일

- 일 시 : 2024년 월 일 시
- 장 소 :

2. 회장 후보자 등록기간

- 년 월 일 09시 ~ 년 월 일 18시까지(2일간)

2023년 12월 일

(사)대한삼보연맹 회장선거관리위원장

<별지 제4호 서식>

접수번호 :

회장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소속 및 직위 :

○ 주　　소 :

○ 연 락 처

- 핸드폰 :

- 이메일 :　　@

위 본인은 사단법인 대한삼보연맹 제6대 회장으로 입후보하여 공정하게 선거에 임할 것을 서약하며, 대한민국 삼보발전을 위해 헌신하고자 후보자로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인)

붙임 : 구비서류 별지 1~6호

(사)대한삼보연맹 회장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5호 서식>

이 력 서

(사진부착)	성 명	한 글		주민등록번호	
		한 자			
		영 문			
	생년월일 년 월 일 (세)				
주 소				자택전화	
E-mail				휴대전화	

년	월	일	학 력 및 경 력 사 항	발 령 청
			학 력	
			경 력	

※ 삼보 및 기타 사회공헌실적 포함하여 작성바랍니다.

<별지 제6호 서식>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인)	생년월일	. . .

<별지 제7호 서식>

(사)대한삼보연맹 제6대 회장 선거

「후보자 주요공약 및 출마의 변」

기 호		성 명		명함사진
주요학력 및 경력	○ ○ ○ ○ ○			

주요공약 및 출마의 변

<내용 작성 요령>

○ 포함내용 : 명함사진, 성명, 주요학력 및 경력, 주요공약, 출마의 변

○ 문서종류 : 한컴오피스 한글 파일 제출

- 글씨체 : 휴먼명조(글자크기 13포인트로 연하게, 장평 100%, 자간 0%, 줄간격 160%)

○ 편집용지

- 용지종류 : A4 세로(폭 210㎜, 길이 297㎜)
- 용지여백(왼쪽·오른쪽 각 25㎜, 위·아래 15㎜, 머리말·꼬리말 10㎜)

○ 제출분량 : 2페이지 이내

○ 제출방법 : 회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간사 이메일 k-sambo@naver.com 으로 제출

○ 제출시한 : 20 . .() 오후 6시까지

○ 활용계획 : 회장후보자 추천심의 및 대의원 총회시 고지 등

<별지 제8호 서식>

회장 후보자 등록 공고

제6대 대한삼보연맹 회장 선거에 있어 회장선거 후보자로 다음의 자가 등록되었으므로 이를 공고합니다.

기호	성명	생년월일	직업 및 지위	비고
1				
2				
3				

년 월 일

(사)대한삼보연맹 선거관리위원장

<별지 제9호 서식>

임원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성　　명 :

생년월일 :

위 본인은 제6대 대한삼보연맹 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함에 있어 대한삼보연맹 정관 및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3조에서 정하는 회장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등록무효, 당선무효 및 법률적 책임을 다할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사)대한삼보연맹 회장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10호 서식>

(중지)·(경고)·(시정명령) 통지서

1. 처 분 대 상:

2. (중지)·(경고)·(시정명령) 내용:

대한삼보연맹 회장선거운영위원회는 귀하가 제6대 대한삼보연맹 회장선거와 관련 (위반사항 내용)하였기에 대한삼보연맹 회장선거관리규정 제33조의2에 따라 상기와 같이 (중지)·(경고)·(시정명령) 처분하오니 향후 위반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사)대한삼보연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별지 제11호 서식>

회장 당선인 공고

년 월 일 실시한 선거에서 결정된 제6대

대한삼보연맹 회장선거 당선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당 선 인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직업 및 직위 :

년 월 일

(사)대한삼보연맹 회장 선거관리위원장